

투자위험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을 감안하여 6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이 투자신탁은 주로 투자하는 채권 및 어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에 의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우리G 국공채법인MMF**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G 국공채법인MMF**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우리G 국공채법인MMF**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ooriglobal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23년 03월 17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3년 04월 19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 2018년 10월 8일(예정)부터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www.wooriglobalam.com) 및 각 판매회사 본·지점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 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회사, 보험 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MMF펀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 가능합니다.
8.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 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법인 전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법인이 아닌 자는 투자하실 수 없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3.03.17)

우리G 국공채법인MMF [펀드코드CF663]

투자위험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우리글로벌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이 투자신탁은 주로 투자하는 채권 및 어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에 의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우리G 국공채법인MMF**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분류	투자신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0.160	0.100	0.150	0.165	16	34	52	91	20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120	0.060	0.220	0.125	13	26	40	71	161
	수수료미징구-퇴직연금C(P)	없음	0.120	0.060	-	0.125	12	25	39	68	155
	수수료미징구-고객(I)	없음	0.100	0.040	-	0.105	10	21	32	57	129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주3)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 2023년2월28일(국내단기금융)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Class)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설정일 이후		
			2022.03.18~ 2023.03.17		2021.03.18~ 2023.03.17		2020.03.18~ 2023.03.17		2018.10.19~ 2023.03.17		
	운용	2018-10-19	2.68		1.81		1.49		1.56		
비교지수	2.59		1.70		1.32		1.40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 등의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신탁재산인 국공채,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단기대출 등의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이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원본의 일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MMF는 신용등급이 우량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므로 이러한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일반 증권투자신탁(채권형)에 대비하여 훨씬 작습니다.	
	장부가과 시가와 괴리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이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영업일(D+1)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5시 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3영업일(D+2)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wooriglobal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 자업자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 (☎ 02-2071-9900)		
모집[판매] 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효력발생일	2023년 04월 19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wooriglobalam.com)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및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 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Class (종류)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C (수수료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I (고액)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에 한합니다.
		P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wooriglobal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wooriglobalam.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wooriglobalam.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펀드코드
우리G 국공채법인MMF	CF663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	CF664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	DU259
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고액)	CF665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퇴직연금)	CF66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 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펀드 용어의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 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1 좌 = 1 원, 원본액 기준)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 또는 예정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2018 년 10 월 8 일부터 시작하여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ooriglobalam.com)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개인 투자자는 매입할 수 없습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펀드코드
우리G 국공채법인MMF	CF663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	CF664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	DU259
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고액)	CF665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퇴직연금)	CF66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주요 내용
2018.10.19	최초설정
2018.11.02	책임운용역 변경 (박재홍 → 송지연)
2019.08.14	보수 변경 -클래스 C, I, C(P) – 운용보수 0.01 인하 (0.05→0.04) -클래스 I – 판매보수 인상 (0.03→0.04) ※클래스 C, C(P)는 총보수 0.01인하, 클래스 I의 총보수는 변동 없음
2019.09.25	-간이투자설명서 개정
2019.11.12	-투자위험등급의 3년간 주간 수익률 변동성 정기 갱신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2019.12.06	- 집합투자업자 명칭 변경에 따른 펀드명, 홈페이지주소 변경 • 에이비엘글로벌자산운용→우리글로벌자산운용 • ABL 국공채법인MMF → 우리G 국공채법인MMF • www.ablgam.com → www.wooriglobalam.com
2020.09.08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하나펀드서비스→우리펀드서비스)
2020.11.03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 반영
2021.03.17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1.06.11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기재)
2021.08.12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송지연→허승구)
2021.10.29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허승구→이새라)
2022.05.20	- 종류 C(E) 수익증권 신설 - '21.10.21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른 문구 반영 - MMF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사항 반영 (듀레이션 변경: 75일→60일)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명칭 변경

	(전자단기사채→단기사채) - 집합투자업자 요약 재무 정보(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업데이트
2022.11.04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21.10.21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2023.04.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제7-36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 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 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ABL 타워 ☎ 02-2071-99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2023.03.17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이새라 (책임운용 전문인력)	84년생	차장	1개	2,169억	명지대학교 경제학 학사 2021.09~현재 당사 채권운용본부 채권운용팀 2015.11~2021.09 유진자산운용 채권운용팀 2009.10~2015.11 DB금융투자 FICC영업팀 2008.07~2009.10 IBK투자증권 GFM운영팀 2002.10~2007.02 DB금융투자 채권팀

(기준일: 2023.03.17)

성명	나이	직위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단기금융형)(%)				운용 경력년수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새라 (책임운용 전문인력)	84년생	차장	2.68	1.81	2.68	1.81	19년 1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공동운용)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상기 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채권운용본부 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 보수가 약정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및 개수: 해당 사항 없음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운용전문인력	성명	운 용 기 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박재홍	최초설정일 ~ 2018.11.02
책임운용전문인력	송지연	2018.11.02 ~ 2021.08.11
책임운용전문인력	허승구	2021.08.12 ~ 2021.10.28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새라	2021.10.29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준	최초설정일 ~ 2021.06.10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단기금융종합투자기구 (법인용),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개인 투자자는 매입할 수 없습니다.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 증권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종류의 수 및 구분에 관계 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일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 행위는 종류 간의 차별 없이 통합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Class)	최초 설정일	가입자격	수수료(%)			보수(%)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집합투 자업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일반사 무관리
C	-	법인 전용으로 가입 제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0.04	0.10	0.01	0.01
C(E)	-	투자자의 자격을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가입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	없음	없음		0.04	0.06	0.01	0.01
I	-	법인 전용으로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투자자	없음	없음		0.04	0.04	0.01	0.01
C(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없음	없음		0.04	0.06	0.01	0.01

각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는 **법인 투자자만** 가능합니다.

주1) 보수 외의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2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CD\text{금리}] + 5 \times [CALL]) / 6$

선정 사유: Call 금리와 CD금리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투자대상의 조건)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주요 내용
①채무증권	● 법 시행령 제 241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남은 만기가 5 년 이내의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 년 이내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 71 조제 4 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법 시행령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양도성예금증서	● 잔존만기 6 개월 이내
③어음	●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어음 ● 잔존만기 1 년 이내
④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 만기 6 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예치
⑤집합투자증권	● 다른 단기금융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
⑥단기사채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59 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
⑦환매조건부매매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 또는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⑧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및 어음 등 포함)의 신용평가등급 제한 등]

-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하 "상위2개등급"이라 한다) 이내 (세분류 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 적용).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 가능
 -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 신용평가등급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 포함)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여 편입한 채무증권의 경우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함)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 제한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 회사는 제외한다)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③동일법인 발행 채무증권 투자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법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을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행위 1. 채무 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 5 [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 2로 하며,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까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어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 3 (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 1)	
	3.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 1 (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0분의 5). 이 경우 1.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④동일 거래상대방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 만기 30일 이내일 것 -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 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⑤환매조건부 매도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하는 행위	
⑥집합투자증 권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증권의 대여 및 차입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⑧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⑨가중평균 잔존만기	투자신탁 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60일을 초과하는 행위	

⑩그 밖의 투자금지 행위	1.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 2. 위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3.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	
⑪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행위	
⑫후순위채 투자	이 투자신탁 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2)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양도성 예금증서·정기예금
 - 나.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 (법 제71조제4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기업어음증권
 - 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기업어음증권은 제외)
 - 라. 단기사채
5. 환매조건부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3)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 위의 (2)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
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위의 (2)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위의 (2) 제 5호부터 7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4)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안정적 자산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산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1. 현금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3. 양도성 예금증서
4.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예의 예치

5.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

6. 상기 (1)의 ④동일상거래상대방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 매수. 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1)의 ④동일상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을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의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별도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위험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일 시가과리율을 점검하여 허용수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한도(60일) 이내에서 운용되는지 점검하여 금리위험을 통제합니다. 또한 신용등급별, 발행자별, 업종별 분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합니다. 유동성위험에 대해서는 유동성제약자산 비중 및 환매에 대비한 가용현금 비중을 점검 관리합니다. 또한, 편입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별로 가중평균 잔존일수를 60일 이하로 유지하여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 합니다.

※ 비교지수: $([CD\text{금리}] + 5 * [CALL]) / 6$

선정 사유: Call 금리와 CD금리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주1)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 (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통안채, 특수채, 유동성 자산 등 단기 금융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된 현금흐름과 높은 유동성 자산을 중심으로 펀드를 운용하여 금리변동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하는데 주력 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상품 가입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 투자신탁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금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적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비용의 증가,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 등의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장부가와 시가와 의 괴리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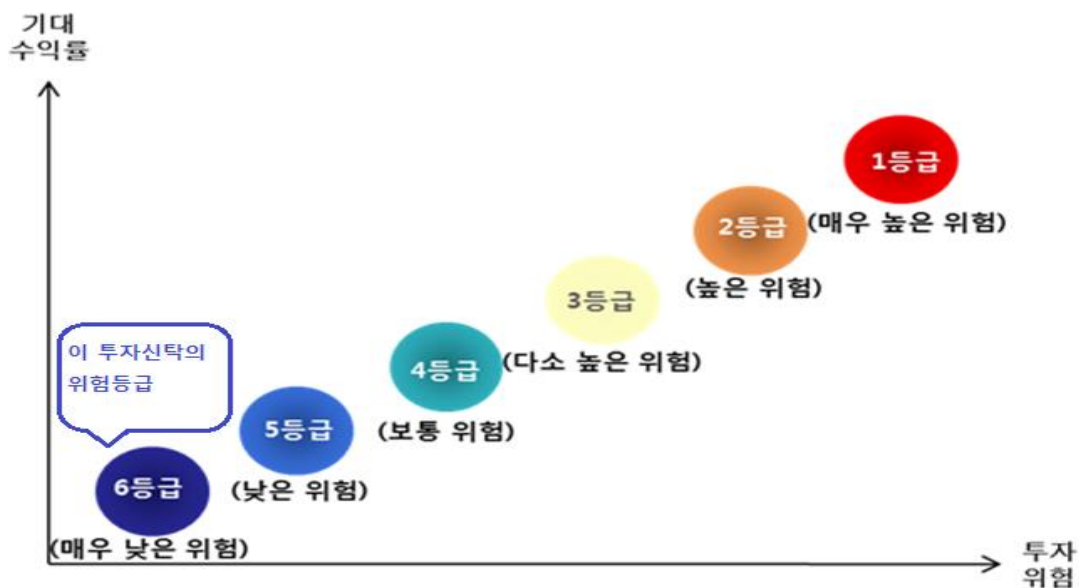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2부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투자회사가 최저순자산액이 10억원 미달하고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순자산액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하는 투자설명서상의 투자위험등급 분류와 판매회사에서 분류하여 사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0.08%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6등급(매우 낮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투자기간이 매우 짧고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수시로 입·출금하고자 하는 법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

1) 설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형 및 인버스형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소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비율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의 의미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의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합니다.

주1)투자위험등급분류는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의 자체기준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2)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추후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고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주4)“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중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 주5)“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저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 주6)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주7)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8) 위에 명시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사 자체 내부 위험등급 심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위험분류 및 위험등급 범위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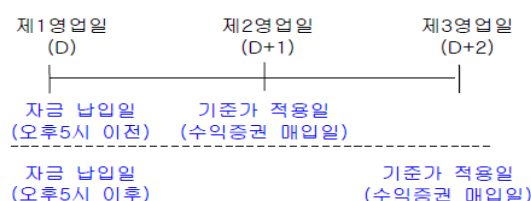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개인투자자는 매입하실 수 없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Class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	법인 투자자로 가입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Class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	투자자의 자격을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lass 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고액)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10 억원 이상인 법인 투자자에 한함.
Class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



(다) 매입가격 적용 예외 사항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납입한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증권 등의 매도 또는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로 판매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경우
- 2)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수취하는 자금으로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 3) 판매회사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단, 토요일은 제외)

※ 기준가 적용일을 집합투자증권 매입일로 합니다.

※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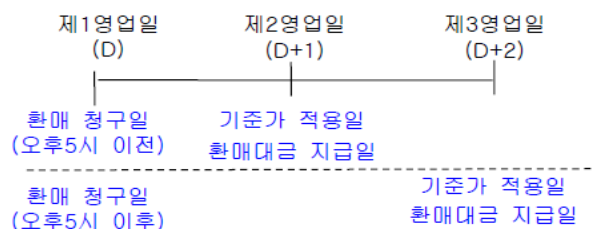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영업일(D+1)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영업일(D+2)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다) 환매가격 적용 예외 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환매청구일 전일에 산출하여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으로 환매하는 경우

- 1)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MMF를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2) 수익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MMF를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법 시행령 제257조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내지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정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 선환매유인 관리조치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장부가격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를 초과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의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운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장부가격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방안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이 발생하여 안정적 자산 비중(30%)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자신탁 재산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으로 투자자간의 형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매를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
- ⑥ ⑤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안정적 자산 확보 방안, 평가방법 변경(시가평가), 적용시점 등 향후 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환매 연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환(이연판매보수 적용에 따른 수익증권 종류의 전환)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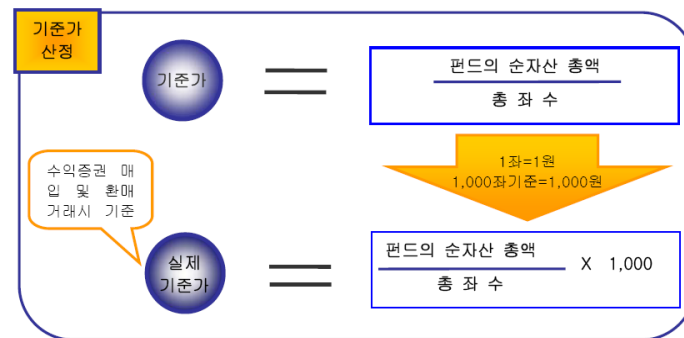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wooriglobalam.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투자신탁(MMF)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종류별로 다음의 방식에 의한 장부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 가 방 법
① 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 및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② 채무증권 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주)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위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적용할 세부기준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 : 유효이자율 (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한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자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

(2) 장부가가격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① 장부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법 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어 그 집합투자재산의 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② '①'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100분의 30이하가 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신탁계약서에 위기상황에서의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선환매유인 관리 조치를 기재한 경우
- 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③ 집합투자기구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최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4)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법 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어 그 집합투자재산의 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 (5) 집합투자기구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최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6)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Class C 수익증권,	선취/후취판매수수료	-	

Class I 수익증권, Class C(P)수익증권	환매수수료	-	환매시
---------------------------------	-------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				
가입자격 (Class)	C	C(E)	I	C(P)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0.040	0.040	0.040	0.040	매 3 개월
판매회사	0.100	0.060	0.040	0.060	
신탁업자	0.010	0.010	0.010	0.010	
일반사무관리	0.010	0.010	0.010	0.010	
보수합계	0.160	0.120	0.100	0.120	
기타비용	0.005	0.005	0.005	0.005	발생 시
총보수·비용	0.165	0.125	0.105	0.125	매 3 개월
동종유형 총보수	0.150	0.220	-	-	-
증권 거래비용	0.007	0.009	0.006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2021.10.18~2022.10.18)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설정 Class의 경우, Class C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21.10.18~2022.10.18)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설정 Class 의 경우, Class C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주 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 5) 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 2023 년 02 월 28 일 (국내단기금융)

주 6)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 매매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31,682
발행분담금	0

※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 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특정 수익 증권에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단,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0.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1,000만원 투자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1,000원)

종류	투자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Class C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17	35	53	93	212
Class C(E)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13	26	40	71	161
Class I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11	22	34	59	135
Class C(P) 수익증권	총보수·비용	13	26	40	71	161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①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등의 지급

-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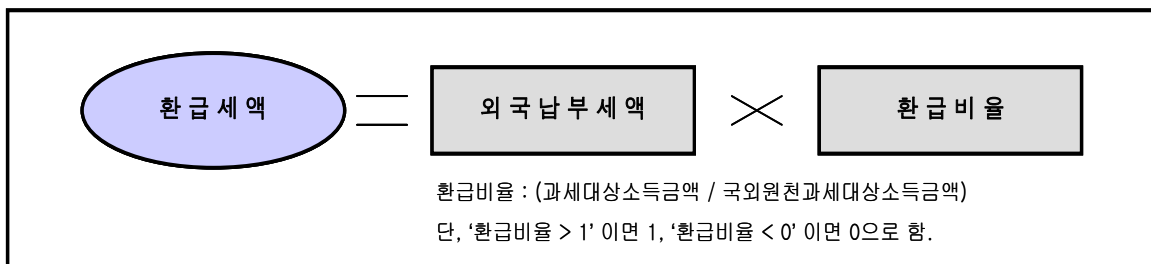
-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2)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3)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 하지만 투자신탁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전자증권법 제 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15.4%)을 부담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 C(P)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투자소득에 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감사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법인	감사의견
제2기 (2019.10.19 ~ 2020.10.18)	삼화	적정
제3기 (2020.10.19 ~ 2021.10.18)	삼화	적정
제4기 (2021.10.19 ~ 2022.10.18)	삼화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2022.10.18	2021.10.18	2020.10.18
운용자산	288,723,469,250	231,498,800,044	564,121,478,573
증권	283,684,640,034	231,497,826,981	554,063,316,97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5,038,829,216	973,063	10,058,161,602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544,559,468	722,037,693	1,624,278,759
자산총계	290,268,028,718	232,220,837,737	565,745,757,33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5,266,052	3,816,956	6,755,862
부채총계	5,266,052	3,816,956	6,755,862
원본	285,262,700,842	230,583,448,459	559,183,237,958
수익조정금	-4,114,116,914	-1,162,832,388	137,924,991
이익잉여금	9,114,178,738	2,796,404,710	6,417,838,521
자본총계	290,262,762,666	232,217,020,781	565,739,001,470

손익계산서			
항 목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2021.10.19 ~ 2022.10.18	2021.10.19 ~ 2021.10.18	2019.10.19 ~ 2020.10.18
운용수익	7,587,607,214	2,465,897,925	5,453,688,765
이자수익	7,688,570,921	3,191,368,467	6,922,480,459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00,963,707	-725,470,542	-1,468,791,694
기타수익	1,572,859,786	366,636,929	1,019,084,283
운용비용	-31,682,472	-23,289,964	-37,982,797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31,682,472	-23,289,964	-37,982,797
기타비용	-14,605,790	-12,840,180	-16,951,730
당기순이익	9,114,178,738	2,796,404,710	6,417,838,521
매매회전율	0.00	0.00	0.00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목	제4기(2022.10.18)		제3기(2021.10.18)		제2기(2020.10.18)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5,038,829,216		973,063		10,058,161,602
1. 현금및현금성자산	5,038,829,216		973,063		10,058,161,602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0		0		0	
대출채권		233,787,341,761		71,719,019,414		231,679,668,726
1. 콜론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91,100,000,000		2,200,000,000		112,400,000,000	
3. 매입어음	142,687,341,761		69,519,019,414		119,279,668,726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49,897,298,273		159,778,807,567		322,383,648,245
1. 지분증권	0		0		0	
2. 채무증권	49,897,298,273		159,778,807,567		322,383,648,245	
3. 수익증권	0		0		0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산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 타 자 산		1,544,559,468		722,037,693		1,624,278,759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0		0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1,536,938,788		721,997,310		1,613,858,214	
4. 미수배당금	0		0		0	
5. 기타미수입금	7,620,680		40,383		10,420,545	
6. 기타자산	0		0		0	
7. 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290,268,028,718		232,220,837,737		565,745,757,332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파생상품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운용부채	0		0		0	
기 타 부 채		5,266,052		3,816,956		6,755,862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0		0		0	
4. 수수료미지급금	5,266,052		3,816,956		6,755,862	
5.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6. 기타미지급금	0		0		0	
부 채 총 계		5,266,052		3,816,956		6,755,862

자	본					
1. 원 본	285,262,700,842		230,583,448,459		559,183,237,958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4,114,116,914		-1,162,832,388		137,924,991	
3. 이월잉여금	9,114,178,738		2,796,404,710		6,417,838,521	
(발행좌수 당가: 285,262,700,842 좌	이익잉여금	9,114,178,738		2,796,404,710		6,417,838,521
전기: 230,583,448,459 좌	수익조정금	0		0		0
전전기: 559,183,237,958 좌)						
(기준가격 당가: 1,017.53 원						
전기: 1,007.08 원						
전전기: 1,011.72 원)						
자 본 총 계		290,262,762,666		232,217,020,781		565,739,001,47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90,268,028,718		232,220,837,737		565,745,757,332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4기(2021.10.19 ~ 2022.10.18)		제3기(2020.10.19 ~ 2021.10.18)		제2기(2019.10.19 ~ 2020.10.18)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9,261,430,707		3,558,005,396		7,941,564,742
1. 이 자 수 익	7,688,570,921		3,191,368,467		6,922,480,459	
2. 배당금수익	0		0		0	
3. 수수료수익	1,572,859,786		366,636,929		1,019,084,283	
4. 기타투자수익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62,801,407		33,056,055		258,600,885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9,668,279		30,316,327		226,394,195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4. 현금및대체채권매매/평가차익	23,133,128		2,739,728		32,206,69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차익	0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63,765,114		758,526,597		1,727,392,579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143,968,367		744,763,378		1,629,357,395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4. 현금및대체채권매매/평가차손	19,796,747		13,763,219		98,035,184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46,288,262		36,130,144		54,934,527
1. 운용수수료	0		0		0	
2. 판매수수료	0		0		0	
3. 수탁수수료	0		0		0	
4. 사무수탁수수료	0		0		0	
5. 지급수수료	46,288,262		36,130,144		54,934,527	
6.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9,114,178,738		2,796,404,710		6,417,838,521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31950124		0.012127517		0.01147716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펀드명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설정좌수	설정금액	환매좌수	환매금액	좌수	금액
운용	2021.10.19 ~ 2022.10.18	2,305.83	2,305.83	21,074.22	21,239.44	20,527.43	20,733.79	2,852.63	2,852.63
	2020.10.19 ~ 2021.10.18	5,591.83	5,591.83	19,831.03	19,892.88	23,117.02	23,190.51	2,305.83	2,305.83
	2019.10.19 ~ 2020.10.18	8,380.10	8,380.10	28,364.31	28,529.11	31,152.57	31,315.99	5,591.83	5,591.83
Class C	2021.10.19 ~ 2022.10.18	312.64	312.64	2,200.89	2,216.27	1,990.52	2,004.41	523.01	523.01
	2020.10.19 ~ 2021.10.18	0.00	0.00	582.89	585.41	270.24	271.56	312.64	312.64
	2019.10.19 ~ 2020.10.1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Class I	2021.10.19 ~ 2022.10.18	1,995.31	1,995.31	18,739.45	18,874.82	18,473.43	18,650.31	2,261.33	2,261.33
	2020.10.19 ~ 2021.10.18	5,596.54	5,596.54	19,191.88	19,241.92	22,793.11	22,854.39	1,995.31	1,995.31
	2019.10.19 ~ 2020.10.18	8,387.59	8,387.59	28,223.00	28,375.44	31,014.05	31,165.29	5,596.54	5,596.54
Class C(E)	2021.10.19 ~ 2022.10.18	0.00	0.00	131.82	132.02	60.06	60.22	71.76	71.76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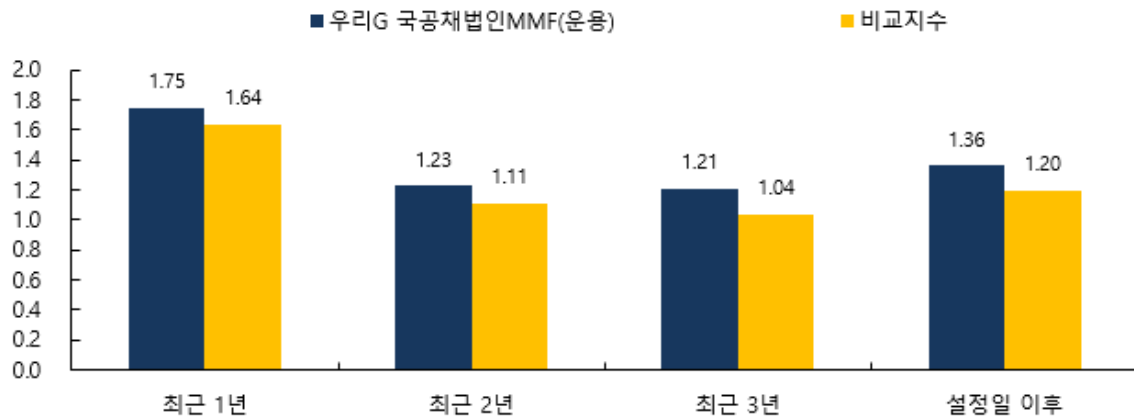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설정일 이후
		2021.10.19~ 2022.10.18	2020.10.19~ 2022.10.18	2019.10.19~ 2022.10.18	2018.10.19~ 2022.10.18
운용	2018-10-19	1.75	1.23	1.21	1.36
비교지수		1.64	1.11	1.04	1.20
변동성(%)		0.08	0.09	0.08	0.08
Class C	2020-05-26	1.59	1.07		1.00
비교지수		1.64	1.11		1.01
Class I	2018-10-19	1.65	1.13	1.11	1.26

비교지수		1.64	1.11	1.04	1.20
Class C(E)	2022-08-24				2.67
비교지수					2.74

주1) 비교지수 : $((CD금리 + 5 * [CALL]) / 6)$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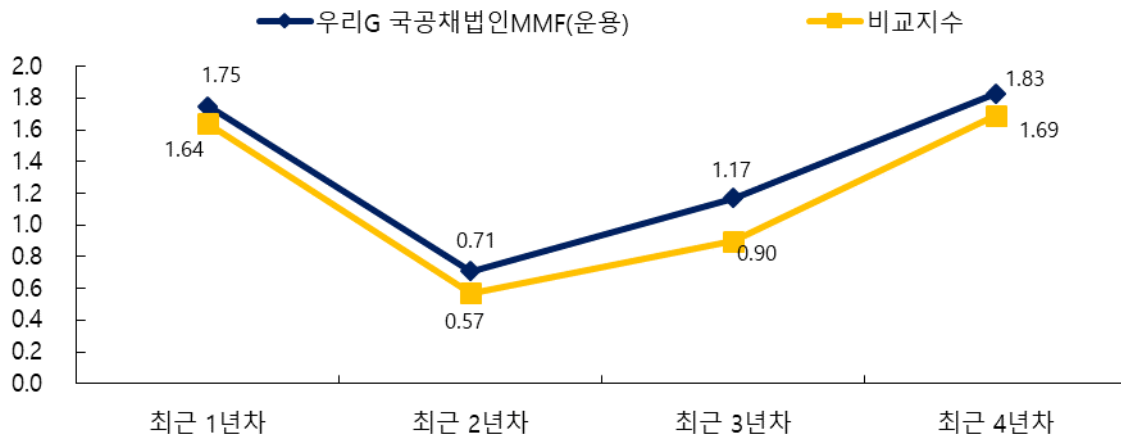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2021.10.19~ 2022.10.18	2020.10.19~ 2021.10.18	2019.10.19~ 2020.10.18	2018.10.19~ 2019.10.18
운용	2018-10-19	1.75	0.71	1.17	1.83
비교지수		1.64	0.57	0.90	1.69
Class C	2020-05-26	1.59	0.55		
비교지수		1.64	0.57		
Class I	2018-10-19	1.65	0.61	1.07	1.73
비교지수		1.64	0.57	0.90	1.69

주1) 비교지수 : $((CD금리 + 5 * [CALL]) / 6)$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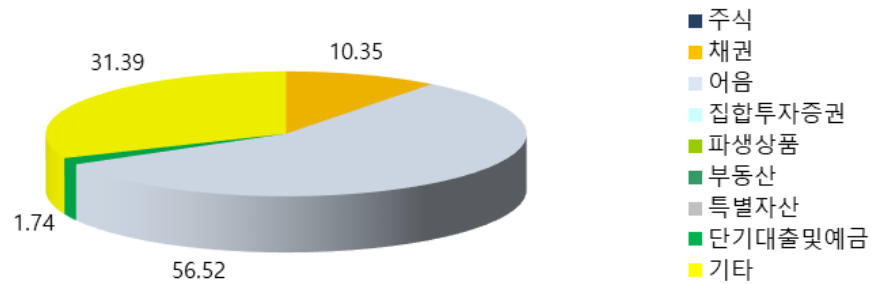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운용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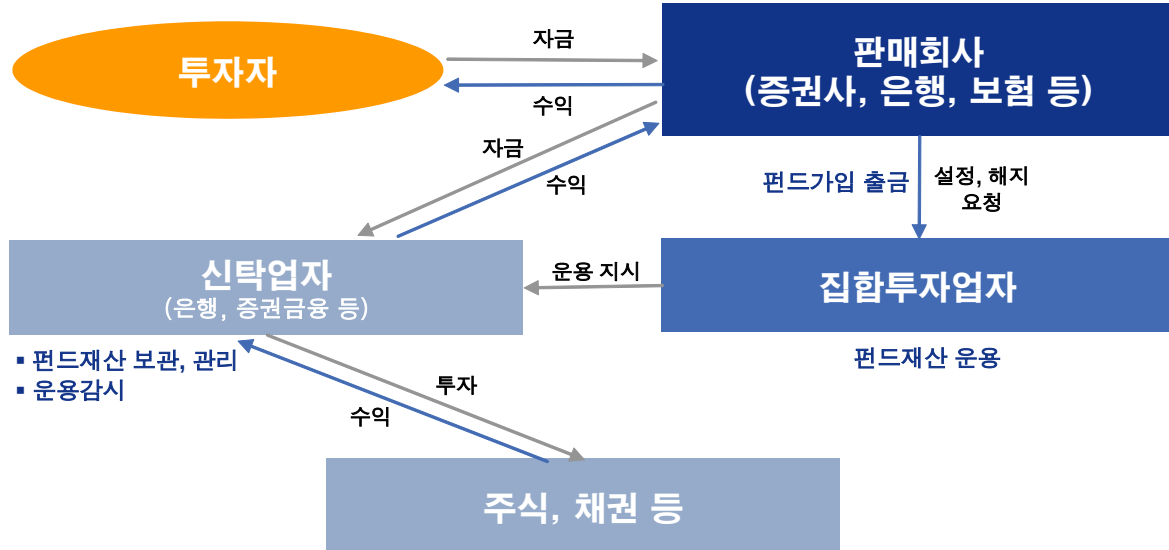
(2022.10.18 기준, 단위: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 자산	기타			
대한민국	0.0	300.3	1,640.7	0.0	0.0	0.0	0.0	0.0	0.0	50.6	911.1	2,902.7
	(0.00)	(10.35)	(56.52)	(0.00)	(0.00)	(0.00)	(0.00)	(0.00)	(0.00)	(1.74)	(31.39)	(100.00)
자산합계	0.0	300.3	1,640.7	0.0	0.0	0.0	0.0	0.0	0.0	50.6	911.1	2,902.7
	(0.00)	(10.35)	(56.52)	(0.00)	(0.00)	(0.00)	(0.00)	(0.00)	(0.00)	(1.74)	(31.39)	(100.0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펀드의 운용 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ABL 타워 02-2071-9900
회사연혁	2000.12 하나알리안츠투자신탁운용(주) 설립 2001. 1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 취득 2001. 3 영업 개시 2005. 8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사명변경 2017. 12. 에이비엘글로벌자산운용(주) 사명 변경 2019. 12.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 사명 변경
자본금	200억
주요주주현황	우리금융지주 100%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에 해당하는 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 우리펀드서비스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2) 선관의무 등

-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집합투자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책임

-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업무의 위탁(기준가격계산 업무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우리펀드서비스(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억원)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21.12.31	2020.12.31	계정과목	2021.12.31	2020.12.31
현금 및 현금성자산	8	55	영업수익	98	8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23	29	영업비용	105	95
종속기업투자	31	20	영업이익	-7	-12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197	162			
유형자산	11	15	영업외수익	0	2
무형자산	8	9	영업외비용	0	1
이연법인세자산	18	16			

기타자산	2	1			
자산총계	298	307			
기타부채	12	12			
복구충당부채	1	1			
리스부채	9	13			
부채총계	22	26			
자본금	200	200	법인세차감전이익	-7	-11
이익잉여금	76	81	법인세비용	-2	3
자본총계	276	281	당기순이익	-5	-14

라. 운용자산 규모

(2023.03.17 현재 / 단위: 억원)

구분	증권				MMF	파생형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투자 일임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수탁고	1,713	201	5,894	3,459	2,169	1,531	12,207	16,425	189	37,355	81,14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증권금융
주 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10 TEL) 02-3770-8800 www.ksfc.co.kr
회사연혁등	1955. 한국연합증권금융 설립 1962. 한국증권금융으로 개칭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수익금, 임대료 등의 수령
-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⑦ 증권상의 상환금의 수입
-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⑩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 일치여부 확인

(2) 의무와 책임

1)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 결과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우리펀드서비스(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60길 17 (연락처: 02-3151-3500) 홈페이지 www.woorifs.co.kr
회사연혁등	2000.08. (주)리젠코리아 인수 영업개시(신탁사업본부) 2000.11. 신탁사업본부 산하 증권수탁팀으로 흡수 2004.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이해상충행위 방지규정으로 업무지원본부 총무부로 조직개편 2007.02. 우리CS자산운용(주)의 업무대리인 계약 2007.12. 조직개편으로 기업영업전략부로 소속 변경 2009.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탁사업단으로 소속변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②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③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④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2) 의무 및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 자산평가	NICE 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8 한국화재보험협회 4층 ☎ 02-3215-14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4층 ☎ 02-398-39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빌딩 4층 ☎ 02-721-53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설립일: 2000. 5. 29 -등록일: 2000. 7. 1 -자본금: 50 억원 (www.koreaap.com)	-설립일: 2000. 6. 20 -등록일: 2000. 6. 30 -자본금: 30 억원 (www.bond.co.kr)	-설립일: 2000. 6. 15 -등록일: 2000. 6. 15 -자본금: 47.5 억원 (www.npricing.co.kr)	-설립일: 2011. 6. 9 -등록일: 2011. 9. 23 -자본금: 50 억원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지급일의 연장, 법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 225 조 2 제 1 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 제 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 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③ '②'에도 불구하고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용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 ④ 법 제193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④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집합투자규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①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의 3) 내지 4)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 1)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 제8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법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매회전율) 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 230 조 제 3 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6 개월, 9 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 개 종목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6 개월, 9 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③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 에서 정한 사유가 및 법 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외)
-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⑨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wooriglobalam.com)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
- ③ 법 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⑩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③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 조 제 7 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②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거래	1) 선정시 고려사항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2)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이 제공될 수 없는 방법] ①회사 경영관련 비용 ②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③마케팅비용 ④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⑤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용어의 정리

용어 (가나다순)	내 용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은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그 공고일 전일의 펀드 수익증권 총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펀드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펀드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이나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예상이 빗나갈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형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환율가격을 현재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하며,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성과 보수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사전에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계약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말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법령 및 신탁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 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신탁계약에 따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말합니다.
투자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즉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통상 연 %로 표시되며, 투자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펀드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신탁업자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주식형투자신탁	펀드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라 하며,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통상 펀드라고 말하며, 대표적으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이미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중도환매를 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해지	펀드의 신탁계약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투자대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펀드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펀드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중도환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펀드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로서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됩니다.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는 대부분 달러등 외국 통화로 주식 등을 사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는 선물환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